

제255회 정례회  
2006.12.14(목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안

교육사회위원회

# 전문위원 검토보고

□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12월 6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12월 6일

□ 제안 이유

○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

□ 주요 내용

○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환경분야의 주요사업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, 기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 자문기능 수행(안 제3조)

○ 위원은 20명(공무원, 민간인, 기업인 등)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함(안 제4조)

○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(안 제5조)

-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(안 제7조)
- 위원회에서는 심의할 안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(안 제8조)
-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(안 제10조)

## □ 검토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환경분야의 주요사업 및 기타 개발 사업에 대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자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92년 유엔환경 개발회의에서 각국의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의제21를 추진토록 한바 있으며 2001년 9월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서울특별시, 경기도, 대전광역시 역시 동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위원회 설치가 활발하게 추진되는 사안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○ 다만,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설치·운영중인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본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각 위원회 기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